옥천군의회 공고 제2020 - 41호

옥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옥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(조례안예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1월 20일

옥 천 군 의 회 의 장

1. **자치법규명** : 옥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   (대표 발의자 : 유재목 의원)

2. **발의의원 : 유재목 의원, 임만재 의원**

3. **제안이유**

○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·감정인 및 참고인 비용지급 근거조항과 지급항목을 관련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

4. 주요골자

○ 비용지급 근거규정 변경(안 제1조)

- 「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의 변경된 조항 반영

○ 지급항목 변경(안 제2조, 제5조)

- '현지 교통비, 숙박료'를 「공무원 여비규정」에 따라 '일비, 숙박비'로 변경

5. 의견제출

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0년 12월 1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(☎043-730-3932, FAX 733-9225)

※ 의견통지내용

가.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· 반 여부와 그 사유)
나. 성명(기관 · 단체일 경우 기관 ·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다. 그 밖에 참고사항 등

붙임 1. 옥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
2. 의견서 1부.

옥천군조례 제　　　　호

옥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옥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및「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제9조의2”를 “및「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의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현지 교통비, 숙박료”를 “일비, 숙박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장”을 “옥천군의회의장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현지 교통비, 숙박료”를 “일비, 숙박비”로 한다.

부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「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·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 및 「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의 ---.
제2조(비용) ① 증인·감정인 및 참고인(이하"증인등"이라 한다)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(철도, 선박, 항공 및 자동차), 현지 교통비, 숙박료, 식비로 한다. ② 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.	제2조(비용) ① --- 일비, 숙박비-----------------. 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 옥천군의회의장---.
제5조(비용 지급일수의 계산)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 교통비,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옥천군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.	제5조(비용 지급일수의 계산) ----------------- 일비, 숙박비 --.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41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44조(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) ③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·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.

□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
제13조(증인 등의 보호 및 실비보상) ③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, 의견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○ 조　　례　　명 : 옥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　　　　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 례 안	의 견